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6기 선정계획 공고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 6기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

☐ 추진근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30호(2026.4.8.공포,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 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기타 공고 및 신청, 선정, 지정 취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등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선정규모 : 22개社 내외

- 신청기간 :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6.07.15.(수) 공고 접수분까지
② 으뜸기업 신청 : 2026.07.08(수) ~ 2026.08.06(목) 18:00까지

- * 으뜸기업 신청 시 발급받은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또는 7월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 * 핵심전략기술 세부내용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30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선정대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2 신청 요건 및 접수방법

- 신청 요건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소부장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또는 7월분 신청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3% 이상)

- * 직전년도 회계결산 재무제표 기준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록특허 5건 이상)

- * 접수마감일 기준, 특허 ‘등록’이 유효한 특허만 인정. 다만, 동일한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 1개의 특허등록 실적으로 간주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 (4인 이상)

- * 전문연구인력의 보유현황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준

④ 전문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접수방법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신청기간 : 2026.05.18(월) ~ 2026.07.15(수) 18:00까지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 핵심전략기술의 원활한 확인업무를 위하여 신청양식 및 보유기술 증빙자료(매출증빙, 공인시험성적서, 특허 등) 제출 요망
- * 7월 15일(수)까지 제출한 핵심전략기술 신청서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종합평가 이전까지 확인 예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으뜸기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07.08(수) ~ 2026.08.06(목) 18:00까지
- 신청양식 : 소부장넷 홈페이지에서 상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 으뜸기업 신청

③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으뜸기업 신청 공통요령

- 전산등록 :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서 관련 자료 업로드
- 모든 신청서류는 신청기관 직인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스캔본 업로드 원칙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접수 시, 신청기관의 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R&D연구자지원시스템(srome.keit.re.kr) 또는 소부장넷(www.sobujang.net)에 사전 회원등록 요망
- *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절차

공고 (산업부)	신청접수 (KEIT)	평가위원회(KEIT)				최종선정 (산업부)
		서면평가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 심사	현장실사 성장가능성+ 목표달성 역량 확인	심층평가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글로벌 진출 역량	종합평가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종합평가	
'26.7월	~'26.8월	'26년 8월 ~ 9월 중				9월 말

* 세부 일정 및 평가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면 평가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 비대면 화상 평가(하이브리드) 및 현장실사(영상) 등으로 선정평가 방법 변경 가능

□ (선정평가) 4단계(서면-현장실사-심층-종합) 선정평가를 통해 국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으뜸기업 선정

① (서면평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을 서면평가 (2배수 내외, 고득점 순)

항목	세부내용
기본역량 (80)	▶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수출비중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 최근 결산기준 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비중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
	* 해당 등록 지식재산권의 핵심전략기술과 관련성 비중 등
	▶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연구인력 보유여부
성장전략 (20)	* 전문연구인력이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전공, 경력, 등록 지식재산권 발명인 여부, 외부 포상 등
	▶ 전문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최소 3억원 이상 투자유치 여부
	▶ 보유 핵심전략기술의 중요도 및 기술수준
	▶ 최종목표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혁신기반 및 전략의 적정성
	▶ 사업화·투자 기반의 우수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글로벌 진출기반 및 확보방안, GVC 편입 전략의 적정성

② (현장실사)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과 목표달성 역량, 신청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

항목	세부 내용
성장가능성	▶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의 적정성과 이와 관련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 탄소중립을 위한 ESG 경영 관련 경영진의 추진의지 등
신청기업 목표달성 역량	▶ 특허, 표준 등 관련기술 보유여부 및 수요기업 요구 기술 인증 확보 ▶ 핵심전략기술 개발 및 사업화 필수장비 보유여부 및 수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인력 현황 적정여부 및 수준 ▶ 마케팅 부서 및 인력 등 역량보유 여부 및 수준 ▶ 신청서류의 사실여부 등 서류의 적정성 등

* 현장실태조사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여 성장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확인

* 현장실태조사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에정이며,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③ (심층평가) 기술, 사업화·투자, 해외진출전략 등을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평가(20%) 및 발표평가(80%) 실시 (1.5 배수 내외, 고득점 순)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전 (20)	서면+현장	(서면평가 등)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기본역량 및 성장전략 등 평가결과
발표 (80)	기술 혁신 역량 (26)	보유기술 및 인프라 수준
		핵심전략기술 분석여부 및 수준
		자체 및 정부 R&D 수행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혁신 노력 및 수준
		원천기술/핵심기술확보·고도화 전략의 구체성 및 수준
		목표와 기업비전 부합성
		세부 추진계획 적정성·구체성
		핵심 기술/인력 유출 방지방안
		CEO의 경영철학 및 의지반영여부
	사업화· 투자 역량 (27)	투자 실적여부 및 실적대비효과
		투자항목 도출여부 및 근거의 타당성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투자역량 대비 규모의 적정성
		기업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사업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네트워킹(Value Chain 참여)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목표 달성에 따른 수요산업 파급효과
		사업화 및 투자를 위한 경영진의 실행의지
	글로벌 진출 역량 (27)	글로벌 시장환경 및 경쟁기업 현황 분석수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수출경험, 해외지사) 수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글로벌 진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글로벌 진출에 따른 상생효과 및 이를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자사브랜드 보유여부
		해외시장 공급채널 확보여부

- ④ (종합평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최종 대상 선정 (1배수 내외, 고득점 순)
- ⑤ (최종선정)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4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 지정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총 5년
 - 지정기간 5년이며, 필요시 검토를 거쳐 연장 가능
- ☐ 지정기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범부처 협업)로 지원

□ 지원내용

① 전용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R&D	-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 -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완화 적용
사업화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등 시설·운전자금 대출 우대 지원
해외진출	수출바우처 등을 통한 해외 시장 조사, 지사화, 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지원

② 연계 프로그램

□ 범부처 지원사업 중 선정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전문기관-산업부-관계부처간 협업하에 종합지원

기술 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

R&D 등 정부출연	발전전략 수립 ▶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 수요-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	+	기술개발 ▶ 전용 R&D, IP R&D, X&D 등 ▶ 민간부담금 완화	+	실증·양산 ▶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 신뢰성·양산평가 등
금융/ 투자/ 세제	융자/대출 ▶ 시설투자, 운영자금 ▶ 수출자금 융자, 특례보증	+	투자/M&A ▶ 투자펀드, 정책금융 ▶ 국내외 M&A 정보제공, 알선·중개, 자금지원, 기술 상용화 등	+	세제 ▶ R&D·시설투자/M&A 등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
공공 인프라	출연연 기술·인력·장비 ▶ 출연연 보유 기술, 인력, 장비 기업 이전·사용	+	수출/판로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수출바우처, GP, GP센터, 해외마케팅, 전시회 등	+	입지 ▶ 산업용지·공장 임대사업 허가, 임대전용산단 우선 입주 등

5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정 취소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으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선정 이후 신청 고려요건 및 선정 대상 제외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지정취소가 될 경우, 으뜸기업 선정으로 인해 지원된 지원책은 지원중단 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제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 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③ 신청기관이 전략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일 경우
 - 단, 한계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 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 ④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⑤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⑥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⑦ 심층평가 대상기업 중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 ⑧ 선정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으뜸기업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내에 으뜸기업 전략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으뜸기업 전략계획서와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및 종합평가 이전까지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③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및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④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 지정 취소 및 선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안에 따라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내 증빙일자는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초과시 불인정 함

☐ 선정기업은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으뜸기업 전략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으뜸기업에 최종 선정·지정된 후에는 으뜸기업을 위한 별도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공고를 통해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경합을 통해 전용 R&D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동 평가의 이의신청은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 할 수 있음

☐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으뜸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으뜸기업 선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급망산업실	053-718-**** (8529, 8370)
핵심전략기술 확인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안보 T/F	053-718-8429
공고 및 접수관련 일반사항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R&D 콜센터	1544-6633

7 사업설명회

□ 추진배경

- 핵심전략기술 관련 우수 소부장 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필요

□ 설명회 개요

- 일 시 : '26. 7. 15.(수), 14:00 ~ 15:30
- 장 소 : 대전 DCC (1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으뜸기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 설명회 취지 소개	KEIT
14:05~14:30	· 으뜸기업 지원제도 소개	KEIT
14:30~15:00	· 으뜸기업 선정평가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으뜸기업 선정절차 및 신청서류 내역	KEIT
15:00~15:30	· 질의응답	전체